PL对보

제조물 책임과 기업의 대응방안

(제품판매후대책/사고발생전의 HD대책/ 입증자료관리대책/위험분산대책/ 사고발생후의 HD대책)

1세품판매후대책

제조업자는 [소비자상담실] 같은 담당부서를 설치해 서상품의클레임 · 상담등을신속하수행할수있도록 한다.본질안전설계 안전장치의 추가설치 이외에 일반 가정에서 예측되는 오사용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설명 서.경고표시를충실히기록하고고장이났을경우의대 처방법 특히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연락할 것' 등의방법을사용설명서에자세히기록한다.

또한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계 · 기구의 경우에는 보 수 · 점검이용이한구조를 갖도록하여야하며 특히 안 전에 관계된 중요보안부품의 교환 작업, 정기점검작업 이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설명하고 사용설명서 · 경고 표시에 반영하는 한편, 사용자에 대해 안전교육 · 계몽 활동을실시하다.

클레임이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였을 때 기대한 기능이나품질이 사용 단계에서 기대에 크게 미흡하거 나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때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불 평이나 불만을 가지고 기업에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하여 신체 · 재산상의 손해가 발 생하거나.위해하지는않아도사고위험이 있는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클레임으로 기업에 신고하는 것이 다.

기업에 있어서 클레임 처리 방법은 소비자가 신고한 클레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 는방법으로신속 · 공평하게 처리하는것이다. 소비자 의클레임신고가있을경우초기에적절히대응하여야 클레임이 원활히 처리되고 소비자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고 및 요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신속 히 대응하다 하여도 사실 관계까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 고소비자의 요구에 무작정 대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클레임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대형 日 사 고를유발할수있으므로각별히유의하여야한다.

클레임 처리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클레임 내용을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사망사고. 부상사 고고액재산손해의경우에는사고현장및클레임대상 이 된 제조물의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의 양 해를얻어 해당제조물을확보하는것이다 또피해자를 방문해서 피해상황을 듣고 제조물의 사용상황 등을 조 사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는 현장이 변경 · 훼손되기 전 에하는것이이상적이지만,대부분의경우사고정보는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전달되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은 당시의목격자나관계자로부터들을수밖에 없다. 더구 나식중독과같은경우시간의경과에따라해당제조물 의 부패도 진행되기 때문에 긴급히 관할기관에 연락하 여 동일한 증거품을 확보(냉장보관 등)할 수 있도록 한 다.

소비자의 클레임을 원활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서는클레임처리흐름을의식하면서기업내의클레임 처리 체제를정비하는것이 중요하다.필요에 따라서는 소비자를방문하여클레임발생상황등을조사하는소 비자 대응 부문,클레임 원인규명 부문과 같은 조직을 각각설치 ·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독립된 부문 으로써설치할수없는경우라면소비자대응을확실히

할수있는담당자의선임이필요하다.

또한 기업 규모나 제품 특성에 따라 부서간의 협조 나타기관의 활용등도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나아 가 사내의 각 부서 또는 타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에는 상호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불가피하며, 클레임 처리 체제의 최고 책임자는 회사를 대표하는 경영진이 담당하는것이 중요하다.

2.사고발생전의 PLD 대책

H.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안 전대책의 추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그렇지만 현 대의 고도소비사회에 있어서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해 최대한의주의를기울인다하더라도R.사고의 발생을 완전하게 예방하기는 어렵다.따라서 기업이 HP대책 을 강구하는 것만으로는 H_대책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말할수없다.제푺사고가발생할경우를예상해서클레 임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PL사고 에 의해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HD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이러한 HD 대책의 하나로 사내의 클레임 대응체제 구축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적절한 클레임 대응체제가 구축될 경우제품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 불평이 설계 · 제조부문에 적절하게 피드백(Feed Back)되어 FIP 대책 면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물론 신제품 을개발하기 위한다양한방법도기대할수있기 때문에 사내의 클레임 대응체제 구축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고할수있다. 또한 제품사고의 발생으로 고객의 신뢰 를일시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절한 클 레임 대책이 행해진다면 잃어버린 신뢰의 회복은 물론 고객과의관계를더욱더견고하게 할수있을것이다.

기업책임의 엄격화가진행되는 현대사회는모든면 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에 대한 자세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의미에서 적절한 클레임 대응이 기업의 사회적 자세를나타내는기준이라는인식을가지고사내체제 의정비와신속 · 적확하게 클레임을 대응하는것이기

업의책임이라할수있다.

HD대책은사고가일어난후의 대응이다라고해석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HD대책은 사고발 생후의대응절차에만머무르는것이아니라사전에사 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 다.구체적으로미리검토해야하는HD대책을살펴보 면(1) 문대응 체제의 정비(2) 문서관리체제의 정비(3) 관련 기업과의 책임 관계의 명확화 (4) HL 보험의 준비 등으로나눌수있다.

3. 입증자료 관리대책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클레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문서관리체제가 확립되어 야 한다. 또한 사내문서 작성시 안전상의 검토결과를 반드시기록하도록하여야하며 평소에오해하기쉬운 표현을 피하여야 한다. 부품 · 원재료 메이커의 경우에 는제조주문서의 내용에 관한 안전성 검토결과를 보관 하여야 하며 출시기간이 오래 경과된 제품은 사고발생 시대응을위해현물을보존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제품은 원재료메이커, 부품메이 커 완성품 메이커 유통업자 판매업자 등 많은 관련기 업이 참여하여 제조 · 공급하고 있고 IL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수의 당사자사이에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 생하게 된다. 복수의 기업이 관련된 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각기업에응분의비용부담을요구하게될것 이므로자사가필요이상의책임부담을하지않도록하 는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계약상대방의 손해배상책 임. []. 사고 예방 및 방어의무. 협력의무. 정보제공의무. PL보험가입의무.자사가 손해배상금 ·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경우의구상권등에대하여도계약상미리정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다만 법률상 책임의 범위를 초 월해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대측의 사정 을고려하지않는획일적인내용의보험준비를의무로 하는행위는공정거래법등에저촉될가능성이있기때 문에주의해야하다.

PL정보

또한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제조업자와 동등한 책임 을부과하는점을고려하여 수입계약에 있어서 해외제 조업자 · 판매업자에 대한 배상청구권 등을 확보해 두 는것이중요하다.

4. 위험분산 대책

제조물책임보험은 기업이 손해배상금 등의 금전적 인부담이발생한경우그손실을전보하는보험으로써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피보험자 가 제조.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인 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 체나재물에손해를입힘으로써피보험자가법률상손 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경우이에따른손해를보상하 는보험이다.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것을 전보하는 방법 으로는 미리 자금을 적립하는 방법과 제조물책임보험 에 가입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손실 은 언제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 하므로 기업경영의 안전화를 위해서 제조물책임보험 을활용하는것이 향후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요하다.

₩ 보험의 정식적인 명칭은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 라하고제품결함에의한사고가발생했을경우에대두 되는 법률상의 배상의무을 대신하는 것으로 제조업자 뿐만 아니라 제품의 판매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중소 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경우 일반 보험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중소기업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5. 사고발생 후의 PLD 대책

클레임 대응에 있어서 '기초대응으로 모든 것이 결 정된다'라고말할정도로 '적절한초기대응' 은무엇보 다중요하다.

적절한 초기대응이 안된다면 상대쪽과의 관계가 악 화되고그후관계회복을위해많은노력을들여야함 은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클레임 보고를 받은 경 우 먼저 정확한 사고상황의 파악 및 관련정보를 입수 하는데 노력하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초기대응을 위해서 영업 및 애프터서비 스부문과판매점 · 특약점 등사외관련자의 협조가 필 요하므로이들에 대한지원활동구축도 매우중요하다. 또한자사제품을 많은 관련 기업이 참가하여 제조하고 있는경우에는필요에따라관련기업에통지하고그들 기업의 협력을 얻으면서 대응해야된다.

클레임대응전반에 걸쳐서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처 음부터 「당사에는 일체 책임이 없다」라는 완고한 태도 를 일괄하는 것은 결코 좋은 대책이 아니다. 자사의 제 품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조 사한 뒤에 대응한다.라는 자세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상대쪽과 대등한 위치에서 필요에 따라 문병하는 등의 성의를가지고대응해야한다.

또한사고를일으킨 제품이 잔존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을 회수해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그경우에는제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편 의 충분한 이해를 얻어 원인규명 결과의 통지 및 제품 반환의약속등성의있게 대응하는것이중요하다.

제품에 결합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 대한 손 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따라서 피해 당사자와 교섭을진행할 때는 자사제품의 결함 존재여부 결함과 피해발생의 역관성 피해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다. 배상책임의 존재여부 확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중 립적이고신뢰성있는기구를이용하는것이바람직하 며,조사결과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해지면 가능한한빨리해결하는것이기업의신뢰회복에도움 이된다.피해당사자와의교섭에의한사고해결이어려 운경우에는 피해자가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분쟁조정 기구에조정신청을의뢰하거나소송을제기할수도있 으므로별도의 대응방악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日 사고발생시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

위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재 산상의 피해이다.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겠지만 RL보험을 가입하 고있는경우에는상대측과면담하기전에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피해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해 손해배상문제 해결이 곤락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 또는소송을통해 구체적인 손해배상범위가 결정되겠 지만피해자에게 부주의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 법상의과실상계원칙을적용받을수있도록노력하는 것도중요하다.

H.사고는가급적기업과피해자의교섭에의해서해 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이가능하지않은경우에는법원의조정절차나재 판외 분쟁 처리기관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겠지만 최 종적으로는소송까지도진행될수있을것이다.

매스컴보도에의한기업이미지저하등을감안해서 소송에 의한 해결은 가능하면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견해도있지만필요이상으로소송을회피하는것 은바람직하지 않다.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배상 요구액의적정여부등을충분히조사한뒤어떠한방법 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가 있다. 한번 FL소송이 제기되면 회사로써는 최종적 인양보안을마련하고최고경영자의 판단에따라대옷 하는것이좋겠지만소송진행의추이를보면서화해하 는것도중요하다.

클레임이 진실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초 클레임이 제기된 시점에서는 밝혀지지 않는것이 보통이다.따라서 신속한 초기대응. 피해자와의긴밀한접촉등을할필요가있지만그안에 수집한정보를 분석하고 결함을 조작했는지 또는 17 법 을악용하여 남의 이름을 빌려 청구한 것은 아닌지 등을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것이 불량 클레임 이라고 판명된 경우에는 아이한 타협적 해결자세를지

양하고,불합리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의연한 태 도를취하는것이 같은 클레임의 재발을 방지하는 최선 의대응책이다.